

-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지역 농업·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교육대상 및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교육의 범위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강사의 위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경비의 지원 및 교육이수자 우대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농촌진흥법」 제1조, 제2조, 제19조
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기 타
 - 가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나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3. 10. 30. ~ 2023. 11. 18.)
 - 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【붙임 2】
 - 라. 성별영향평가 : 【붙임 3】
 - 개선사항 없음(2023. 10. 30. 가족지원과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 농업·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교육 계획 수립, 교육생 선발, 교육 범위, 보조금 지원, 위탁운영, 강사 위촉,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상과 같이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례안으로
- 관계 법령에 위배 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, 자치법규의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함.